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는 무엇인가요?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종에서 최근 5년('18~'22년)간 전체 11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 떨어짐 36, 끼임 15, 부딪힘 15, 폭발·화재 13, 맞음 12, 깔림 9, 넘어짐 5, 감전 3, 무너짐 3, 기타 6

떨어짐

'21.11.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전구 교체 작업 중 2.6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 사다리는 평坦·견고하고 미끄러짐 없는 바닥에 설치
-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로 작업

끼임

'18.1. 식료품 리프트로 자재 이동 작업 중 운반구 사이에 끼여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 화물 운반구 출입문, 출입문 연동장치 (인터락) 설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화물 운반구 근로자 탑승 금지
- 탑승금지, 정격하중 등 주의표지 부착
- 리프트 안전검사 정기 실시

부딪힘

'21.7. 경사로에서 식자재 하역작업 중 후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 운전위치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고임목 등 설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역작업 실시
- 차량 하역운반 작업 시 운행경로, 작업방법에 대해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 통제·관리하는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방법, 위험요인 등 근로자 주지

※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

이것만은 기본!

-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
-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
-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설치·부착하세요.
-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사다리 사용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조여주세요. ('24.1.26. 30cm 높이에서도 근로자가 떨어져서 사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자료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 동 내용은 중소사업장 이해를 돋기 위해 간소화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상세한 법적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②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사항 총 15가지 중 **핵심 의무사항을 안내**하니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아래 핵심 의무사항을 **최소 반기 1회는 체크해보세요!!**

핵심 의무사항 하나!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 예시 ⇨ 아래는 예시임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
 - (방침) “우리 작업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목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사고 00건 감소”, “매월 우리 사업장의 숨은 위험 00건 찾기” 등
 - (공유·전파)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주의 의지를 알리고, 근무 공간이나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둘!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 (권고사항) 다만,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겸직 가능, 사업주(대표)가 수행 가능)
 - ▶ 예시 직원 중 선임급 직원을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직원으로 지정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셋!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
- ▶ 예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지급, 컨베이어·화물용 승강기 등 기계 비상정지장치·연동장치 등 설치·보강, 지게차·호이스트(크레인) 등 정비·점검, 안전표지판(출입금지, 떨어짐·끼임·넘어짐·고온 등 경고) 설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등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넷!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합니다.

-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아차사고)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서식 등은 위험성평가 시스템(오른쪽 QR 참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예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및 주의사항을 근무 시작 전 조회시간,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무 공간,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 유해·위험요인 예시
 - ◉ 사다리나 불안전한 발판을 사용하여 물품 적재 또는 기타 설치·수리·보수 작업 시 떨어짐 위험
 - ◉ 화물차량 상·하차 작업 시 떨어짐 위험 ◉ 물품 입고·검품 등 작업 시 컨베이어·화물용 승강기 등에 끼임 위험
 - ◉ 컨베이어·세차기·분쇄기·압축기 등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정비·보수 청소 작업 시 끼임 위험
 - ◉ 지게차·화물차량·호이스트·집게크레인 등 작업 시 운반 자재나 기계에 주변 근로자 맞음·부딪힘·끼임 위험
 - ◉ 적재된 자재·물품 무너짐·맞음 위험 ◉ 물품 입고·청소·이동 시 문턱·물기·바닥 등에 걸리거나 넘어짐 위험
 - ◉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기구 작업 시 부딪힘·끼임·근골격계 질환 위험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다섯!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 ▶ 예시 화재 등 비상대응 매뉴얼(비상대피도, 비상연락망, 이송 병원 등) 마련, 이전에 발생한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마련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